

한·중 FTA체제에서 중국의 원산지검증제도와 원산지불인정사례 연구

A Study on the Origin Verification of China and the Cases disapproved under Korea-China FTA

배 명 렬* Myong-Ryeol Bae
심 상 렬** Sang-Ryul Shim

I. 서론	Ⅰ. 목 차	V. 결론
Ⅱ. 한·중 FTA의 원산지검증제도 고찰		참고문헌
Ⅲ. 중국의 원산지검증제도와 사례 분석		Abstract
Ⅳ. 중국 원산지검증의 시사점		

국문요약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중 FTA체제에서 중국의 원산지검증제도를 고찰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중국의 통관과정에서 겪은 원산지 불인정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수출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 중국의 원산지검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중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기관측면에서는 관세당국은 중국의 관세당국과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 발급단계에서 원산지검증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검증 리스크를 줄이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원산지증명의 형식적인 요건을 증시하여 통관단계의 검증에 대비해야 하며, 한중간의 품목분류 차이 극복을 위한 사전검사제도의 활용과 중국의 제도변화에 대한 모니

*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제1저자

**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교신저자

터링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한·중 FTA, 원산지검증, 수출기업

I. 서론

중국시장은 지리적 인접성, 시장의 규모 등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2016년 한국의 총수출 대비 대중국 수출비중은 25.1%로 2015년의 26.0%보다 약간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2개국과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비중도 2015년의 36.6%에서 다소 줄기는 했어도 3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한·중 FTA는 2016년 발효 2년차에 불과했기 때문에 FTA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는 품목 자체가 제한적이었으나 향후 관세인하 폭이 커질수록 FTA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은 한·중 FTA 3년차 관세인하에 힘입어 대중국 수출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인하 폭 확대에 따라 활용 기업 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 FTA 활용확대와 보완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일방적인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록 한·중 FTA가 발효되었지만 경제적 의사결정보다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FTA체제 내에서도 원산지검증제도를 비관세장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수출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는 2017년 발효 3년차에 접어들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지만 중국의 원산지검증이 강화될 경우 그 타격은 최종적으로 한국 수출기업이 받게 되므로 사전적으로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16년 한국의 대중수출에서 FTA활용률은 33.9%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은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실증 분석되고 있으며(이지수, 2015), 외국의 사례에서도 FTA활용은 기업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arris et. 2009). 수출기업은 FTA를 활용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증명제도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산지검증에 대한 철저한 대비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수출업체는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거래 파트너인 수입상을 잃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 FTA 체제에서 중국의 원산지검증제도 관련 법규를 연구하고, 중국이 한국 수출물품에 대해 실시한 원산지검증에서의 원산지불인정사례를 분석하여 중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 한·중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검증제도를 고찰하고, 제Ⅲ장에서 중국의 원산지검증제도와 원산지불인정사례를 분석하고, 제Ⅳ장에서 중국의 원산지검증제도와 운영사례가 한국 수출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Ⅴ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한·중 FTA의 원산지검증제도 고찰

1. 한·중 FTA 원산지검증제도 개요

1) 검증절차

원산지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수출입물품과 관련하여 신고된 물품의 원산지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물품에 대해서는 시정 등의 조치를,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행정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한·중 FTA는 협정문 제3.23조(원산지검증)에서 원산지검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증 방식으로서 간접검증 및 방문검증을 통한 직접검증을 도입하고 있다. 간접검증과 관련하여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국 관세당국에 간접검증 요청과 함께 검증요청 이유, 원산지증명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수출국 관세당국은 검증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검증 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공하며, 수입국 관세당국은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산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수출국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방문검증과 관련해서는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국 관세당국이 동의할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의 안내 하에 수출자, 생산자에 대한 방문검증을 할 수 있으며, 수입국 관세당국

은 검증 실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수출국 관세당국에 대해 서면 요청을 해야 하며, 수출국 관세당국은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입국 관세당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출국 관세당국이 방문검증에 대해 동의하나 검증 일을 연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러한 의사를 방문검증에 대한 동의와 함께 수입국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증 일 연기는 제안된 방문검증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수출국 관세당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국 세관공무원의 동행하에 방문검증을 실시한다. 수입국 관세당국은 방문검증 결과를 수출국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수출자, 생산자는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이러한 검증결과에 대한 추가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추가 의견 및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결과를 수출국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방문검증은 실제 방문일로부터 최종 결정일까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세부 절차에 관해서는 양국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

수입국 관세당국은 검증 중인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유보하나 이 경우에도 특별히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한·중 FTA의 간접검증 기간은 수출국이 검증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최대 9개월이 걸릴 수 있어 아세안, 인도와의 FTA보다는 길지만 베트남과의 FTA보다는 짧다.¹⁾ 또한 수입국은 수출국의 결과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출국에 원산지여부를 통보해야 하므로 9개월 이전에 검증이 종료될 수도 있다. 한편 현지방문에 의한 직접검증은 아세안, 인도, 베트남과의 FTA가 연장신청과 연장기간이 각각 서면통보일로부터 15일내, 연장 포함하여 60일 이내로 정하되 양국 합의로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중국과의 FTA는 제안된 방문검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방문검증의 완료는 모두 6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입증책임과 자료보관

원산지검증은 특혜 수입통관 이후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보관,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FTA 협정 및 국내법은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원산지 증빙 자료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검증 시에 입증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사후검증과 관련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를 발행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FTA특례법령²⁾ 및 개별협정에서 정한 원산지를 입증할 수

1) 한국은 중국 외의 아세안, 인도, 베트남과의 FTA에서 先간접검증, 後직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출국의 회신기한은 아세안 2개월, 인도 3개월, 베트남 6개월이며, 완료기한은 아세안과 인도는 6개월, 베트남은 10개월 이내에 간접검증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있는 근거자료를 일정기간동안 보관해야 하며,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해당 원산지증빙자료를 보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또는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특혜관세 적용배제와 함께 벌금, 과태료 등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다(정재열, 정재완, 2013).

한·중 FTA 협정문은 보관대상 증빙자료와 보관의무기한을 수출자 및 생산자, 수입자 등 당사자별로 규정하고 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상품과 그 상품의 생산에 소요된 중립재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 및 지불과 관련된 기록과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에 관한 기록 등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상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그 밖의 모든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자국의 법률에 따라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 특히 한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가 증빙서류보관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중 FTA는 증빙서류 보관기간을 3년으로 짧게 규정하고 있다.

한·중 FTA는 자료보관 및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⁴⁾ 한·중 FTA는 자료보관 및 제출의무를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대상은 수입자로 한정되어 있다. 한편 한국의 FTA 특례법은 자료보관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 수입자는 물론 수출자, 생산자에 대한 제재도 포함하고 있다.⁵⁾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약칭 FTA관세법)로 2015. 12. 29 전부 개정,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법에서 약칭을 'FTA관세법'으로 명명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FTA특례법' 또는 'FTA관세특례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FTA특례법'으로 사용한다.

3) 한·중 FTA 제3.20조(기록유지 요건)

4) 한·중 FTA 제3.23조(원산지검증) 제5항에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는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즉 ① 수입자가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요청에 대해 요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 ②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에 대한 요청에 대해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검증결과를 6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③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공된 검증결과 또는 방문검증 결과가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의 진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의 방문검증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⑤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입국 관세당국의 방문검증 서면요청에 대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FTA 관세법 제44조(벌칙)-제46조(과태료)에 규정

2. 선행연구 검토

기존의 한-중 FTA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한-중 FTA 체결에 앞서 한국과 중국이 기체결한 FTA의 원산지기준을 비교분석하여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시사점을 도출하거나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관리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중국의 원산지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한-중 FTA의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도출하는 연구 등도 있었다.

이행문(2009)과 장직(2012)과 강산(2014)과 고원(2014)과 자오쉬(2014)는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관리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중국 원산지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심희(2013)와 이홍주(2015)는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의 원산지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권영국(2015)은 한-중 FTA의 원산지 사후검증제도를 분석하고 자동차부품기업을 중심으로 한-중 FTA 원산지검증 시물레이션을 통해 원산지관리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덕보(2016)는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비교분석하여 한-중 FTA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연숙(2008)은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분석하여 한-중 FTA에서 무역창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제시하였고, 최문과 이상빈(2009)과 최송자(2010)와 김구태와 초서량과 박형래(2013)는 중국이 기체결한 FTA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비교분석하여 한-중 FTA에서 제정할 원산지기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찬우와 오동윤(2013)은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을 분석하고 한-중 FTA에서 농수산물분야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이신규(2012)는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한 FTA별로 원산지규정을 비교분석하여 한-중 FTA의 원산지규정 협상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성호(2014)는 중국 원산지제도의 법적 규정을 분석하여 중국 원산지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영달과 이신규(2016)는 한-중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이행절차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다른 협정과 차이점을 도출하였으며, 김형철과 김희철과 라공우(2016)는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FTA를 체결하고 있는 칠레와 아세안과의 각국 FTA의 원산지관련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의 원산지규정 또는 결정기준 관련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의 원산지검증제도와 그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고는 중국의 원산지검증과 관련된 법규 및 중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절차 등 중국의 원산지검증제도를 살펴보고, 한-중 FTA

발효 후 중국 세관의 한국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불인정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세관의 한국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Ⅲ. 중국의 원산지검증제도와 사례 분석

1. 중국의 원산지관리체계

중국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률체계를 살펴보면 최상위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⁶⁾이 있다. 이 두 법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반포되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원산지관리를 한다는 사실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조례는 국무원에서 제정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세관법도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는 국가의 관련 원산지규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규정은 일반 원산지관리규정인 국무원이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 원산지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⁷⁾와 특혜원산지관리제도인 해관총서⁸⁾가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물품 특혜원산지관리규정(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优惠原产地管理规定)’⁹⁾에 의거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운영지침으로는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원산지관리운영지침이 있다(해관총서, 2012).

중국은 원산지관련 규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 원산지조례(이하 ‘수출입물품 원산지조례’로 약칭함)’를 가지고 있으나 적용범위를 최혜국대우, 반덤핑과 반보조·보장조치, 원산지표기관리, 국별 수량제한, 관세 쿼타 등의 비특혜 무역조치 및 정부구매, 무역통계 등의 활동에 있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정에 적용하고 특혜 무역조치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정은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6) 1987년 1월 23일, 제6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채택, 2007년 7월 8일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해 개정하였다.

7) 2004년 8월 18일 국무원 제61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04년 9월 3일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16호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8) 해관총서(GACC, General Administration of China Customs) :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며, 1980년 2월 대외경제 무역부에서 분리 독립한 국무원 직속 기관

9) 2008년 12월 25일 해관총서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해관총서령 제181호)

있다.¹⁰⁾ 나아가 구체적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의 특혜 원산지 규정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해관총서에서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 물품 특혜원산지 관리규정(이하 ‘특혜원산지 관리규정’으로 약칭함)¹¹⁾, ‘한중 FTA 협정문’ 그리고 한중 FTA 실행을 위해 중국 해관총서에서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 원산지관리방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 이하 ‘중·한 FTA 원산지관리방법’으로 약칭함)¹²⁾ 등의 규정에 의거한다.

한국의 원산지규정 관련제도는 특혜원산지규정인 관세법과 FTA특례법, 그리고 비특혜 원산지규정인 대외무역법을 기본 축으로 하는 법률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조미진, 여지나, 김민성, 2008). 그러나 중국의 원산지관리제도는 중국 대외무역법에 그 내용이 거의 없고 조례와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세관법도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는 국가의 관련 원산지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조례나 규정에 위임되어 있다. 조례나 규정은 법률에 비해 신속한 개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법률보다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대외신인도가 약하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박성호, 2014). 또한 한·중FTA 이행을 위해 한국은 한·중FTA 협정문이 법률로서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지만 중국은 ‘중·한 FTA 원산지관리방법’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2. 중국의 FTA 원산지검증제도

중국의 특혜 원산지규정의 주무부서는 중국 해관총서이며, 구체적인 시행은 각 지방세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중국 세관은 ‘특혜원산지 관리규정’ 제19조에서 “물품의 원산지가 수출입물품 수하인, 적송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및 기타 신고서류에 부합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물품 검증 관리방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특혜무역협정 수출입물품 및 포장에 원산지표시가 표기된 경우 그 원산지 표시에

10)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 원산지조례(국무원령 제416호) 제2조

11) 제1조에서 특혜무역협정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세관의 특혜무역협정 수출입물품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규율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에 근거하여 동 규정을 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2) 2015년 12월 7일 해관총서 서무회의 심의, 통과되었고 201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 해관총서령 제229호

표기된 원산지는 ‘특혜원산지 관리규정’에 따라 확인한 물품의 원산지와 일치해야 한다.¹³⁾ 중국 세관은 필요시에 수출 회원국이나 지역의 주관기관에 특혜무역협정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특혜무역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물품 원산지에 대한 방문심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¹⁴⁾ 즉 중국세관은 간접검증을 원칙으로 하지만 한·중 FTA에서처럼 개별 협정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현지방문에 의한 직접검증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한 FTA 원산지관리방법’은 제22조에서 원산지 검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중국세관의 원산지심사 방법의 순서는 첫째 수입물품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에게 수입물품 원산지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 둘째 한국세관에게 물품의 원산지 자격 심사를 요구, 셋째 한국세관에게 한국의 수출업자 혹은 생산업자에게 대하여 방문심사를 할 것을 제기, 넷째 한국세관과 공동으로 협상하여 정한 기타 절차의 순서로 검증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산지검증은 수입자 검증, 한국세관을 통한 간접검증, 방문검증에 의한 직접검증, 기타 합의된 방식 등으로 순차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세관은 원산지검증을 통해서 원산지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즉 중국세관은 ① 수입물품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수입을 신고할 때 규정에 부합되는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관련 설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자격 구비여부에 대한 보충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상업송장, 운송증권 등 기타 상업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규정 제14조¹⁵⁾의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의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검사확인 또는 실사를 거쳐 물품의 원산지와 신고 내용이 부합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또는 물품의 진실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이 규정 및 해당 특혜무역협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기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⁶⁾ 중국은 이외에도 ‘중한 FTA 원산지관리방법’ 제24조¹⁷⁾에서 한·중FTA 협

1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물품 특혜원산지 관리규정(해관총서령 제181호) 제20조. ‘중한 FTA 원산지관리방법’ 제26조에서도 중한 FTA에 따른 수출입물품 및 그 포장에 원산지 표지를 표시하는 경우 그 원산지 표지는 본 방법에 따라 확정된 물품 원산지와 서로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물품 특혜원산지 관리규정(해관총서령 제181호) 제22조

15) 물품의 수입통관을 신고할 때 수입물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의 신고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물품 통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적용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성명해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물품의 유효 원산지증명서 원본 또는 당해 특혜무역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성명문건, ②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 운송증권 등 기타 상업증빙서류. 물품이 기타 국가나 지역을 경과하여 중국 경내에 운송된 경우에는 이 규정 제10조 제2항에 규정에 부합되는 복합운송증권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국가나 지역에 임시 보관시킨 경우에는 당해 국가나 지역의 세관이 제시한 이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16)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물품 특혜원산지 관리규정(해관총서령 제181호) 제21조

17) 아래 정황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수입물품에 ‘중·한자유무역협정’의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수입물품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은 물품 수입신고 시 협정세율의 적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본 방법 제18조 규정을

정문의 원산지검증 절차상의 불이행에 따른 적용배제를 포함하여 협정세율 적용배제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중국세관은 원산지검증을 수입통관단계에서 철저히 실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세관의 '특혜원산지 관리규정'은 제15조에서 중국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에 "① 당해 특혜무역협정의 증명서 서식, 작성내용, 서명날인, 제출기한 등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상업송장, 통관신고서 등 증빙서류의 내용과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규정의 형식적인 요건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중한 FTA 원산지 관리방법' 제20조에도 "① 원산지증명서는 한국 수권기구가 물품 적재운송 전, 운송 시, 혹은 운송 후 7업무일내 서명·발급되어야 한다. ② 서명 및 인장 등 보안특징을 갖추고, 인장이 한국이 중국세관에 통지한 인장형태와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③ 영문으로 작성한다. ④ 중복되지 않는 증서 일련번호를 갖추어야 한다. ⑤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다는 근거를 기재한다. ⑥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내 유효하다."고 형식적인 요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한국은 원산지검증에 있어 사후검증원칙을 가지고 있어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서면검증과 수입자검증을 통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국은 사후검증보다는 수입통관과정에서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사후검증을 통해 공정무역을 위한 원산지 확인에 중점을 두는 반면, 중국은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FTA를 비롯한 감면 건은 100% 서류심사를 하는 등 통관과정에서 원산지 위조여부와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심사한다(정재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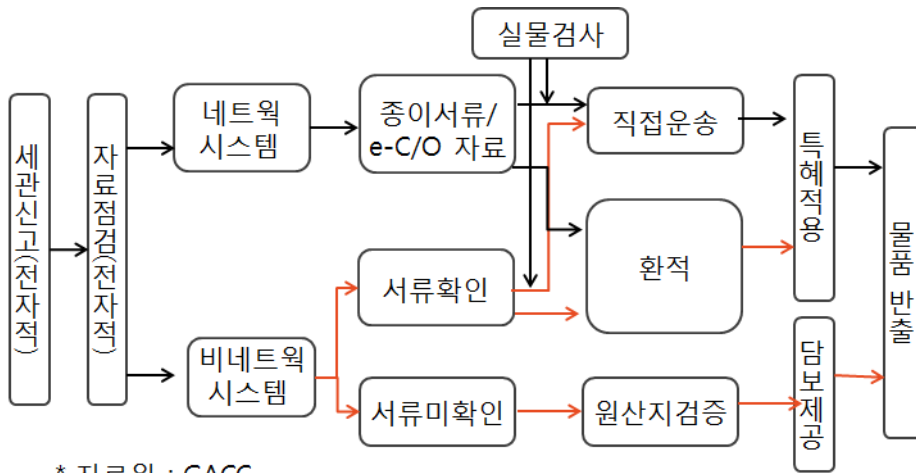
3. 중국세관의 원산지검증 절차

중국세관에서 원산지정보로 수집하는 항목은 원산지증명서 번호, 수출자, 공장등록번호, 하역항구, HS코드, 제품명세, 수량단위 및 수량, 금액 및 화폐단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치게 되며, 대부분 세관의 컴퓨터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게 된다.

따라 보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물품이 한국 원산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③ 원산지증명서가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④ 원산지 심사 청구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세관이 한국세관의 심사회신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혹은 방문심사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내 세관이 한국세관의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혹은 세관의 심사방문요구가 거절된 경우, 혹은 세관이 받은 심사회신결과 혹은 심사방문결과에 의문이 있는 물품의 원산지 자격 진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⑤ 본 방법의 기타 다른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세관의 통관절차를 살펴보면 대부분 전자적 통관절차를 밟게 되는데 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하는 경우는 종이서류와 원산지증명서 자료를 점검하여 탁송품은 필요한 경우에는 실물검사를 거쳐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반출하게 된다. 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탁송품은 필요한 경우 실물검사를 거쳐 특혜관세가 적용되어 반출되고 서류상으로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증단계를 거치게 된다. 검증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고 물건을 반출한다. 세관통관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세관의 통관절차도



* 자료원 : GACC

원산지증명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점검하고 등록되어 있는 견본품과 형식, 서명, 인장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특히 직접운송원칙이 준수되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과정을 거친다.

정상적인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관례적인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 사후 통관을 하는 경우는 원산지검증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기도 한다. 수입통관단계에서의 원산지검증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과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행정협력측면에서 검증을 시행한다. 한편 사후 통관의 경우는 원산지검증에서 원산지기준을 충족했는가를 보며 현지방문검증도 시행한다.

행정협력 차원의 원산지검증은 첫 번째 단계로 원산지검증을 위한 선적물품을 선별한다. 지방 세관은 수입통관단계에서 당면하는 문제 또는 통관 사후감사에서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시행한다. 두 번째 단계는 내부검사단계로 복주(福州), 심천(深圳)과 공북(拱北) 소재 원산지규정사무소(branch office of ROO)에서 해관총서에 의해 승인된 증빙서류인지를 점검한다. 세 번째 단계는 원산지검증 요청을 전송하는 단계로 검증을 시행하는 세관은 정식공문, 이 메일, 전화연락 및 기타의 연락방법으로 전달한다. 네 번째 단계는 회신관리로 수입품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회신을 처리하는 단계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원산지검증 대상 물품을 선정하고 내부점검을 하는 단계로 통관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무작위로 행해지거나 원산지증명서에 문제가 있을 때 행해진다. 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완성되지 않았거나 서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② 서명이나 날인의 상태, ③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 ④ 중국세관에 통보되지 않은 유사한 발급기관 또는 보안상의 특징이 있는 경우, ⑤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 ⑥ 내부전산망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수입통관단계에서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수입자에게 통보되고, 협정관세의 특혜가 유보되며, 수입물품은 담보제공과 같은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반출된다. 통관 후의 감사단계에서 검증이 일어나는 경우는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취해진다. 리스크의 지표로는 무역업자의 과거 이력, 관련 관세의 규모, 물품의 종류, 환적국가, 제3국에서의 선적기간, 수입물량의 비정상적인 증가 혹은 감소 등이 일어난 경우에 진행이 되며 이러한 경우는 수입자에게 통보되지 않는다.

세 번째 단계는 원산지검증 요청서가 전달되는 단계이다. 검증요청 시에는 이유, 원산지증명서 원본 혹은 복사본, 기타 필요할만한 정보 혹은 서류, 회신기한 등이 전달되며 전자적 방식 또는 우편 방식으로 연락이 이루어지며 비밀리에 진행된다. 네 번째 단계는 회신을 처리하는 단계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는 협정관세 특혜조치는 부정되며,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유를 통보하고, 담보물은 수입관세로 전환되며 과태료와 행정벌과금이 부과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사법적인 항소를 진행한다(해관총서, 2012).

중국은 원산지조례의 관리 및 실행기관은 주로 중국 해관총서와 각 지방의 세관이 담당하고 있다. 즉 중국 특혜원산지규정의 주관기관은 중국 해관총서이며 구체적인 원산지판정 관리기관은 각 지방 세관이다. 그러므로 단일한 원산지관리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관리 및 실행기관의 결정이 오류가 발생하거나 신규 물품 등의 확인 요구되는 경우에 신속히 해결하기 곤란하다. 한국의 원산지확인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박성호, 2014).

4. 중국의 원산지검증 불인정사례 연구

한국은 원산지검증에 있어 사후검증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세계관세기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국가의 39%는 통관 전 또는 후에, 그리고 20%는 통관 전에만 실시한다고 응답하였고 통관 후에만 실시한다고 응답한 국가는 40%였다(Tanaka, 2011). 중국도 통관 후에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사례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수입물품의 통관단계에서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통관 전 원산지검증 유형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 역시 중국 세관이 통관 전에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 있어 원산지검증은 곧 통관지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관세청, 2016).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세관의 통관단계에서 발생한 원산지 불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원산지증명서 원본 요구

중국으로 컬러필터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국내의 한 수출업체는 중국에 반복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수출 건마다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구하여 특송으로 수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중 FTA는 원산지전자자료교환시스템(EODES)¹⁸⁾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원본제출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기간에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물품보다 늦게 도착하여 통관이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사례에서 보듯이 수입통관단계에서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류보다 수출물품이 먼저 도착하여 원산지서류가 도착할 때까지 FTA 협정관세의 특혜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물류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비용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수출업체의 불편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박세현, 2016).

2) 중국 세관 담당자의 협정에 대한 임의적 해석

중국에 유압기기와 산업기계 등을 수출하는 국내의 한 수출업체는 한·중 FTA 발효 이후 협정관세의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중국에 원본을 발송하였으나 현지 중국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이면이 인쇄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본으로 인정

18) 원산지전자자료교환시스템(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은 관세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FTA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상호 통보하는 시스템

불가능하다고 반려했다. 협정에서 정당한 서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세관 담당자가 임의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원산지증명서가 국가기관이 아닌 상공회의소에서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했던 사례도 있다.

본 사례는 한중 FTA 협정문 부속서 3-다(원산지증명서)에서 “여기의 지침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뒤쪽에 기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면 지침이 인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산지증명서 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이다. 협정문의 규정도 중국 관세당국의 담당자에 의해서 불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도 세관과 상공회의소 모두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상공회의소가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특혜적용을 배제했던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협정에는 선적 후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급문구”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7일 이내에 발급한 경우에도 “소급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으며, 현행 한국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출력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세관에서 인주가 날인된 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3) 품목분류(HS code) 번호의 상이한 적용

자동차 스프링용 와이어로드를 중국에 수출하는 한 수출업체의 사례에서 한국 관세청은 품목분류에 있어 탄소, 망간, 규소 외의 다른 원소가 함유된 경우 실리콘망간강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례의 와이어로드는 크롬원소 0.6%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기타 합금강에 해당하므로 HS 제7227.90호 기타 합금강으로 분류되어 FTA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으나, 중국세관은 HS 제7227.20호 실리콘망간강으로 분류하여 일반관세율 5.2%를 적용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본 사례는 같은 품목에 대해서 품목분류를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이다. 본 건은 중국 세관 측과의 장기간의 협의를 통해 무관세 품목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였으나 이외에도 조미김¹⁹⁾, 유자청²⁰⁾, 자동차부품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원산지증명서의 HS 코드는 수입국 HS코드로 기재해야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되므로 수출자는 사전심사서를 통해서 중국세관의 공식적인 문서로 HS코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 한국은 HS코드 2106.90호의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분류하나 중국은 HS코드 2008.99호로 과실견과류 조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20) 한국은 HS코드 2008.30호의 조제한 유자로 분류하나 중국은 HS코드 2106.90호로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4)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 기재 등 형식적 요건 고집

국내의 한 수출업체는 인천세관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으로 송부하였으나 중국 천진공항세관에서 발급담당자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산지인정이 배제되었다. 인천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원본을 재송부하였으나 중국 세관은 원산지증명서가 일반 A4용지에 출력되어 세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인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의 원산지증명서 조회사이트를 통해서 정식 발행본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본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은 자국 수출물품이 FTA 특혜적용을 받는 것보다는 원산지증명서 위조 등 부정적 방법으로 FTA 특혜를 적용받아 관세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위조 확인을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양식, 인장, 서명 등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꼼꼼한 심사로 통관을 지체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정재호, 2016).

IV. 중국 원산지검증의 시사점

FTA를 체결한 국가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기본 전제 요건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수출자와 이를 바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수입자는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사례를 통해서 사전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업차원에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협정문의 규정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와 관세당국 차원에서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관세당국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17년은 한·중 FTA 발효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실질적인 기간은 발효된 지 겨우 1년이 지나고 있어 아직은 중국세관의 원산지검증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업체도 통관단계의 원산지불인정사례를 관세청, 상공회의소 등의 지원기관에 즉각적으로 보고하는 보고채널을 구축하는 등 민관 협력채널을 가동해야 할 것이고, 지원기관은 다양한 불합리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한·중 관세당국자 회의를 통해 시정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중국이 예측 가능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1. 관세당국에 대한 시사점

1) 중국세관과의 협정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협상 필요

사례에서 보았듯이 중국은 각 지방세관 담당자의 협정 및 법규에 대한 임의적 해석에 의해서 특혜관세적용을 배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특혜관세 배제 사례는 물류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여 FTA 효과를 반감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유관기관 및 관세당국은 중국 측과의 협상을 통해서 협정문의 규정을 준수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FTA 협정관세의 특혜적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8년 발효된 뉴질랜드와 중국과의 FTA 사례에서 뉴질랜드는 중국세관이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 상의 미세하고 문체상의 오류(minor/ stylistic variations)를 문제 삼는 사례가 많았고, 특히 중국 측은 위조서류(fraudulent documents)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질랜드세관은 중국세관에 자문을 한다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했음을 소개하고 중국세관과의 유대관계를 심화시킬 것을 조언하고 있다. 뉴질랜드 관세당국은 뉴질랜드의 수출과 수출물품에 대해서 중국의 신뢰를 높이고, 중국세관과의 관계를 구축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FTA가 중국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컨설팅하는 지원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고 조언하였다(Ku Seona, 2016).

또한 국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간의 협조체제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 관세청과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달라 중국세관이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하였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실질적인 업계지원 확대

중국과의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단순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에 국한하지 말고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원산지검증이 대부분 통관 전 수입통관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중심으로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전문가그룹을 배치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단계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인 문제 등 사전에 서류상의 진정

성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한 협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원산지 인증수출 자제도를 활성화하여 가능하면 많은 미인증기업들이 인증수출자로 전환되어 원산지검증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 수출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원산지증명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 확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방식으로 한국은 세관,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로 규정되어 있고 중국은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으며, 협정문에 원산지 증명서 서식과 서식의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인식하고 관료주의적 행정시스템으로 검증이 일어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요청 유형을 살펴보면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미준수, 발행장소 미 기재, 서식의 상이 등으로 주로 형식적 요건 미흡을 이유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측 HS코드와 원산지증명서에 표기된 HS코드가 다를 경우에도 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관세청, 2016).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측은 통관 전에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 있어 원산지검증은 곧 통관지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상대국 수입자에게 보내기 전에 형식적 오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중국 관세당국은 한중FTA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EODES) 활용을 위한 활성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어 동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형식적 요건 확인을 위한 검증요청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으로 확인되어 특혜적용을 하였다하더라도 원산지검증을 위한 서류보관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으로 이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2) 품목분류 불일치에 대한 사전 확인 및 대응

한국과 중국은 HS코드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서 수출물품에 대한 중국측 HS코드에 대한 사전확인과 중국측 HS코드에 따른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

요가 있다. 한·중 FTA 협정문에는 사전심사제도²¹⁾가 있으므로 수입자와 협의하여 중국 관세당국에 HS코드 사전분류를 신청하는 등 정확한 HS품목분류를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에서는 ‘HS코드 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므로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입신고서의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준수해야만 협정관세의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3) 중국의 제도변화에 유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산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중국의 원산지관리제도는 중국의 대외무역법 및 세관법(해관법)에는 그 내용이 거의 없고 조례와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조례나 규정은 법률에 비해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개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법률보다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대외신인도가 약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의 특혜원산지규정 주관기관은 중국 해관총서이며 구체적인 원산지판정 관리기관은 각 지방 세관이다. 즉 원산지 판정에 대한 단일한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관리 및 실행기관의 결정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신규 물품 등의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에 신속하게 해결하기 곤란하다. 앞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각 세관의 세관원에 따라 원산지규정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중국의 원산지관련 규정들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행정규칙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 등 제도적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원산지검증의 최종 책임은 수출자에게로 귀결된다. 원산지검증의 실패는 수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수출자 거래선의 손실을 가져와 거래의 단절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원산지검증의 실패는 당해 건의 협정관세 특혜 철회

21) 한·중 FTA 협정문 제4.10조(사전심사)에서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그 밖의 모든 신청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사전심사 요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상세설명을 포함하여 신청자에 의하여 제공된 사실 및 상황을 기반으로 서면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는 물론 거래가 반복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품목의 모든 수출에 적용되므로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검증은 수출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수출자의 경쟁력과 신뢰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완전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경제정책에 있어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원산지검증 문제에 대한 접근도 일반적 접근보다는 중국시장에 적합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원산지검증 요청이 몇 건에 지나지 않았고 그것도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수입통관 시 중국세관에 의한 현장검증은 그 사례가 많을뿐더러 원산지불인정으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된 사례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관세청, 2016). 특히 중국은 FTA 뿐만 아니라 APTA²²⁾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충족이 미흡한 경우 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의 원산지관리제도가 법보다는 행정규정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기에 안정성의 문제에서 취약하고 행정편의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세당국은 중국과의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협정문에 어긋나는 원산지불인정 사례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한·중 FTA는 원산지증명서가 기관발급방식을 택하고 있는 만큼 발급 기관들이 발급단계에서의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검증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출업체 또한 중국세관이 수입통관단계에서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만큼 형식적 요건을 확실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한국과 중국의 품목분류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사전에 수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품목분류 상이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배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제도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제도변화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원산지검증시스템을 분석하고 중국세관의 실제 적용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그러나 한·중 FTA가 발효된 지 1년여 정도의 기간으로 일반적인 FTA 원산지 사후검증 사례를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중국의 원산지검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되기를 희망한다.

22)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는 1976년 '방콕협정'으로 발효되었으나 회원 간의 무역확대를 목적으로 2006년 9월 1일에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으로 개정되어 발효. 당초 인도, 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가 회원국이었으나 2002년 중국이 참여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강문성(2015), “한·중 FTA 원산지 규정의 특징과 엄격성 지수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11권 제3호, pp.215-232
- 강산(2014), 「한·중 원산지관리제도 비교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원(2014), 「FTA 하에서 중국원산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국(2015), 「한·중 FTA의 원산지검증 대응전략과 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자동차 부품기업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구태·초서량·박형래(2013), “한·중 FTA의 원산지 협정 제정에 관한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제13권 제2호, pp.253-272
- 김연숙(2008), “한·중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3호, pp.239-256
- 김형철·김희철·라공우(2016), “한·중 각국이 체결한 FTA협정의 원산지규정 비교 연구”, 「무역학회지」 제41권 제1호, pp.139-158
- 박성호(2014), “중국 원산지관리제도에 관한 소고”, 「경제경영」 제47권 제1호, pp.87-112
- 박세현(2016), “한·중 FTA 활용 1년의 애로사항과 대응방안”, 「FTA TRADE REPORT」, Vol.04 December 2016. pp.79-84
- 송형근(2016), “한·중 FTA 활용에 관한 기업애로”, 「2016 국제원산지세미나 자료집」, 관세청, 2016. 11. 8, pp.79-84
- 여행문(2009), 「한·중 원산지관리제도 비교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덕보(2016),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심희(2013),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달·이신규(2016), “한·중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7권 제1호, pp.27-50
- 이지수(2015), “원산지사후검증이 FTA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4호, pp.93-115.
- 이찬우·이동운(2013), “한중 FTA추진에 따른 중국 원산지규정 연구-농수산물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63권, pp.125-152.

- 이흥주(2015), 「한·중 FTA의 추진과 원산지규정 비교를 통한 한국의 협상전략과 대응방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자오쉬(2014), 「한·중 FTA 발효와 중국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적(2012), 「한·중 원산지제도의 비교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호(2016), “한·중 세관당국간 원산지전자자료교환시스템(EODES)운영과 협정적용절차”, 「2016 국제원산지세미나 자료집」, 관세청, pp.107-129
- 조미진·여지나·김민성(2008), 「한국과 중국의 FTA원산지규정 비교: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8-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문이상빈(2009), “중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기준에 대한 비교 연구 :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중 FTA추진에 따른 중국 원산지규정 연구-농수산물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0권 제2호, pp.201-242.
- 최송자(2010), “중국이 체결한 FTA협정의 원산지기준 비교연구”, 「통상법률」 제95호, pp.77-112
- 관세청(2016), 「Origin Verification Brief」, 2016-3호, 관세청
- 진병진, 임병호, 박진우, 배철환(2015), 「한중 FTA 이행을 위한 협정, PSR 등 활용방안 연구」, 서울, 국제원산지정보원
- 관세청 FTA 포탈,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
-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탈, <http://www.fta.go.kr/main/situation/fta/term/>
- 중국한국상회, http://www.korcham-china.net/html/newsflash/newsletter_list.asp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http://stat.kita.net/stat/kts/ktsMain.screen>
- Atsushi Tanaka(2011), *World Trends in Preferential Origin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WCO Research Paper No.20, World Customs Organization, pp.7-11.
- Harris J. & Staples B. R.(2009), *Origin and beyond: trade facilitation disaster or trade facility opportunity?*, ADBI Working Paper Series,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pp. 1-12
- Ku Seona(2016), “New Zealand Custom’ approaches to FTAs”, *2016 International Origin Seminar*, Korea Customs Service, 2016. 11. 8, pp.19-23
- GACC(2012), *Practices of China Customs in Preferential Origin Verification*,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A Study on the Origin Verification of China and the Cases disapproved under Korea-China FTA

Myong-Ryeol Bae

Sang-Ryul Shim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origin verification system of China via literature research and analyzes cases of Korean exports origin disapproved of Chinese customs clearance, to provide origin verification strategy recommendations for Korean companies exporting to China under Korea-China FTA. We reviewed the provisions of Chinese rules of origin and analyzed origin disapproved cases gathered from various presentation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customs authority needs to establish a consultation channel with the customs authority of China, and origin certification issuing agencies should provide exporters with consulting services in the certificate issuing stage to reduce verification risk. Second, exporters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formal requirements of the proof of origin, utilize the advance rulings program of differences in classification of item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monitor regulatory change in China.

〈Key Words〉 Korea-China FTA, Origin Verification, Exporter